

== 종계등록은 왜 필요한가? ==



<대한 양계 협회>

가. 종계등록 경위

우리나라 양계 산업은 수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을 가져 왔으나 양계 경영면에서 불때에는 생산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계란과 닭고기의 가격변동이 너무 심하여 양계의 불황이 2~3년 주기로 찾아 왔으며 특히 71년 후반기의 불황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기틀까지 뒤흔들어 놓을만큼 심각했으므로 그 주요원인은 일반 경기의 침체로 수요가 일시 감퇴한 이유도 있으나 과다한 공급 즉 너무많은 외국종계가 수입되므로서 생산과잉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이를 계기로 정부, 업계, 학계 모두 종계수입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정부는 농수산부공고 426조로 본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협회에서는 도입계 수입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업자스스로 자율적인 종계수입조절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년간의 종계 수입추천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량의 종계수입추천 만으로는 종계의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72년 11월 14일 개최된 제12회 본회 도입계 수입추천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입계 외에 국산계를 포함한 모든 종계의 수급조절을 하며 수입종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불량 초생추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등록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종계수급 조절위원회로 개칭 하게 되었다.

나. 종계등록은 왜 해야하나?

1) 계통이 불분명한 초생추 생산을 방지한다

일반 양계농가가 채산이맞는 호경기를 맞게되어 초생추 수요가 많아지자 이를 이용하여 불량 초생추를 생산판매하는 부화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일부 악덕 부화장에서는 암탉에 숫탉만 배웅하여 수정란이면 모두 종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계의 상호를 도용 판매 또는 외국계와 불량추를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종

계를 등록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계통이 불분명한 초생추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일반 양계잡지에 공고하므로서 일반 사육가를 불량 초생추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양계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여 양계발전에 기여한다.

등록된 종계를 기초로 양계 산업에 대한 기반조사를 실시하므로서 양계산물의 수요를 추정하여 종계수급을 조절하고 사료 수급에 원활을 기하여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이루는 기초 자료를 얻는다.

3) 우량한 혈통을 보전 보급하고 형질의 개량과 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인다.

현 국립 시험장 민간 종계 육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계를 등록하고 본회에서 실시하는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통해 우량계통의 품종을 보존하는 닭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능력이 우수한 닭을 생산 보급한다.

다. 등록방법

종계의 등록은 다음의 종계등록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종계등록규정안

제 1 조 (목적)

1. 우량한 혈통을 보전 보급하여
2. 형질의 개량과 능력을 향상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고
3. 계통이 불분명한 초생추 생산을 방지하여
4. 양계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여 양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의 심사 결정) 본 등록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종계 수급 조절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모든 문제를 의결한다.

제 3 조 (등록대상)

- 등록의 대상은 1. 국내에서 육종 개량된 종계
 2.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종계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GPS에서 생산되는 PS
 4. 기타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계

제 4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종계라 함은 본회의 등록부에 등기된 닭을 말한다.

제 5 조 (등록의 종류) 등록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예비등록.....3조 4항의 닭
2. 본 등록.....22주 이후

제 6 조 (입란 및 발생계)

1. 종계가 산란하여 그 종란을 부화기에 입란하였을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본회 소정양식(이하 소정양식)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자손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제 7 조 (신고) 종계의 수수에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동증명) 종계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양도인은 곧 소정양식의 이동증명신청서에 종계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고 이동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상속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증명서 재교부) 등록 증명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는 소유자에게 소정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한다.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록에 부정이 있다고 본회가 인정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할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닭의 등록증명서는 본회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등록접수의 정지) 전항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닭의 번식자 및 소유자 또는 관계자중 등록에 신용을 품지 손상시킨 것으로 인정된 자의 등록 신청은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로부터 1년간 이를 접수하지 않을수 있다.

제12조 (등록의 고시) 등록 종계 및 제10조의 해당하는 닭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양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청의 시요) 등록에 관한 신청서 기타 서류의 불비할것에 대하여 회답 및 수속등을 촉구하였을때 이를 태만하여 15일 이상이 결린것은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종계등록을 필하였을 때는 소정양식의 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 (등록 및 수수료)

1. 본회 회원의 등록료 및 수수료는 1수당 또는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비회원에게는 3배의 요금을 징수한다.

	구 분	용도별	수 당 등록료	비 고
외국계	GPS	산란계	20원	
		육용계		
	P S	산란계	5	
		육용계		
국산계	GPS	산란계	10	
		육용계		
	P S	산란계	2	
		육용계		
순 계			1	

2. 등록신청에 있어 조사 때문에 특별한 비용을 요할때는 신청자는 그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등록료 및 수수료는 신청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기왕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것은 세칙으로 정하며 일반사항은 종계수급조절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